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3. 21.(수) 15: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 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1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12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2018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8-13-097)

○ 이효성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2018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8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방송공사 등 7개 방송사의 지상파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재허가 대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상파DMB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신청서류에 따른 방송사업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와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심사하고,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그 피해가 점증함에 따라 지상파DMB 방송에 대해 재난방송 공적책임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9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는 심사위원장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심사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재허가 여부, 재허가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임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세부화한 심사기준 및 그 배점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및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 및 심사사항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지상파DMB 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의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허가 여부 결정 방안입니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하게 됩니다.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안)입니다. 보고 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4월 중으로 재허가 신청 공고를 하고,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 6월 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11월에 재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원안대로 좋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저 역시 이번 지역 지상파DMB 재허가 세부 계획(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지역 지상파DMB 정책 전반에 관련된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역 지상파DMB 방송은 지역방송의 이동수신을 보장하는 공익적인 가치와 방송권역을 6개의 대권역으로 허가한 취지인 산업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이 설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영을 하고 있는 지역지상파 방송사가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지상파 UHD 이동수신 도입 등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통위가 이동방송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방송정책국에서 지상파UHD 이동서비스 개발 및 도입 로드맵에 대한 정책연구 때 지상파DMB 정책까지 포함

해서 지상파방송의 이동수신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지상파DMB뿐만 아니고 DMB 사업을 허가했는데 실제 운영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 DMB 운영사,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방송정책국에서 이동방송 전반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연구를 완료하고 완료되는 대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8-13-098)

○ **이효성 위원장**

- 다음은 <의결안건 나>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에이더블유코리아(주)를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허가조건은 첫 번째, 귀 법인은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귀 법인은 위치정보서비스 제공시 해당 이용자에게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귀 법인은 소요 설비 및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계획,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대책 등에 관하여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의 이행실적을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분석 및 재무, 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은 매년, <나>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은 반기별, <다>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은 반기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8년도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허가신청 공고는 2018년 1월 18일부터 1월 31일부터 하여 에이더블유코리아(주), 씨엔씨티에너지(주) 등 총 2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결격사유 조회 결과 임원 및 법인 여부에 대해서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018년 3월 6일 개최하였으며, 재무, 영업, 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세부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기준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환산 시 60점 이상 시 적격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에이더블유코리아(주)는 적격으로 판단하고 씨엔씨티에너지(주)는 심사사항별 점수 및 총점 미달로 부적격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씨엔씨티에너지(주)의 부적격 사유는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설비규모의 적정성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하였습니다. 2개 항목에서 60점 미만을 받았고 총점도 60점 미만이 되어서 부적격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가 조건입니다. 위치정보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번에 허가를 하고자 하는 에이더블유코리아(주)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별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습니다.

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13-099)

○ 이효성 위원장

- 이어서 <의결안건 다>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의, 이하 피심인이라 하겠습니다.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피심인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배경은 피심인이 국내 통신사업자와 망 접속 관련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SKT·SKB·LGU+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여 페이스북 접속이 제한되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 및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5월경에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과 관련해서 KBS 등 약 20여개 매체에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17년 6월 30일까지이며, 조사대상 사업자는 Facebook Ireland Limited, 페이스북의 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홍콩 소재 Edge Network Services Limited, Facebook Korea Limited, (주)케이티, SK브로드밴드(주), (주)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 주요경과입니다. 2017년 5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관련자 면담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7년 8월 11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하여 11월 30일까지 피심인 출석조사, 자료제출 분석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7년 11월 말부터 12월 28일까지 시정조치(안)에 대한 피심인의 서면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1월 22일 페이스북 본사의 네트워크 담당 임원, 법률대리인 등 참석 하에 구두로 의견진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4일 설립한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이용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 정보 공유를 돕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지역을 담당하는 페이스북 본사, Facebook Inc.가 되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Facebook Ireland Limited 피심인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 코리아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로 페이스북의 마케팅 및 영업지원 사무소에 해당하나 국내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망 관리를 위한 에지네트웍스도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16년 말 페이스북 총 매출액은 약 276억 달러, 순이익은 102억 달러이며, 일일 접속자 수는 전 세계 약 12억 3,000만 명이며, 직원은 18,770여 명이 되겠습니다. 피심인 서비스에 대한 국내에서 일일 접속자 수는 약 1,20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및 방법입니다. 피심인 및 KT, LGU+, SKB, SKT 통신 4사를 대상으로 망 접속 현황, 민원 발생건수, 관련 이메일 등 접속경로의 변경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현장조사와 관련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위사실입니다. 피심인과 국내 통신사업자 ISP사업자의 망 연동 현황을 살펴보면 피심인은 접속경로를 변경하기 전에는 국내 KT, SKT, LGU+ 이용자에게는 주로 KT의 '목동 IDC'를 통해서, SKB 이용자에게는 주로 홍콩 'Mega-I IDC'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망 연동현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접속경로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은 SKT·SKB에 대하여 '16년 12월 8일 LGU+에 대해서는 '17년 1월 14일 및 2월 14일 각각 접속경로를 KT를 통한 접속에서 해외 망을 통한 접속으로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접속경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고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SKB 및 SKT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한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은 2016년 12월 8일 SKT 무선망 트래픽의 접속경로를 국내 KT IDC에서 홍콩 Mega-I IDC로 변경한 결과 기존 홍콩 직접접속 용량이 부족해졌습니다. 당초 홍콩 IDC에 직접접속하던 SKB트래픽 중 일부가 회선대역폭이 협소한 국제 망 미국 NTT, 홍콩 PCCW, 텔스트라(Telstra) 등 구간으로 이동하면서 SKB트래픽에 병목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트래픽 경로 변경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접속경로 변경 후인 '16년 12월 8일부터 해외 망 증설 개선 전까지인 '17년 6월 18일 까지의 피심인 서비스에 대한 SKB의 네트워크 최번시인 20시부터 24시까지의 응답속도는 평균 29ms에서 평균 130ms로 4.5배가 느려졌다는 사실, 응답속도 저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5월 말에서 6월 초 기간 중에는 최대 250ms까지 SKB의 응답속도가 저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피해 상황입니다. 피심인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후 페이스북의 접속지연, 사진 동영상 재생 불능 등 서비스 이용 장애 등을 이유로 SKB 콜센터에 접수된 페이스북 관련 이용자의 문의 및 불만 접속건수는 총 1,857건으로 변경

전에는 일평균 0.8건이었던 것이 변경 후에는 일평균 9.6건으로 12배 증가하는 등 이용자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SKB는 2016년 12월 23일, 2017년 1월 31일 이메일로 그리고 2017년 3월 22일 대면회의를 통해 이용자 불만 해소를 위해 접속경로를 국내로 원상 복구해 줄 것을 페이스북에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SKB는 '17년 4월 24일부터 '17년 6월 19일까지 국제전용회선 및 해외 ISP와 연동용량을 증설하여 이용자 불만을 6월 이후에 해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심인은 '17년 10월 13일 SKT의 접속경로를 국내로 다시 원상복구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LGU+에 대한 접속경로 변경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심인은 LGU+의 유선망 트래픽에 대한 접속경로를 '17년 1월 14일 LGU+ 무선망 트래픽에 대한 접속경로는 '17년 2월 14일에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1차는 유선 트래픽 중 11Gbps를 2차는 무선 트래픽 중 25Gbps를 국내 KT IDC에서 홍콩, 미국 등 해외 ISP로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접속경로 변경 후인 '17년 2월 14일부터 해외 망 증설 등 망을 개선한 3월 9일까지 기간 피심인 서비스에 대한 LGU+ 무선네트워크의 응답속도는 최번시인 20시에서 24시까지 기간 중 평균 43ms이던 것이 평균 105ms로 2.4배 느려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LGU+ 무선망 이용자의 응답속도가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2월 중순경에는 최대 220ms까지 저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피해입니다. 피심인의 접속경로 LGU+ 콜센터에 접수된 페이스북 관련 이용자 민원 및 불만 접수건수는 총 827건으로 변경 전 일평균 0.2건이던 것이 변경 후 일평균 34.4건으로 172배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LGU+는 2017년 2월 17일, 2월 18일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 불만 해소를 위해 접속경로를 국내로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를 거절하였으며, 이후 LGU+는 2017년 4월 26일부터 2017년 6월 12일까지 국제전용회선 및 해외 ISP와 연동용량을 증설하여 이용자 불만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피심인은 2017년 11월 18일 LGU+의 접속경로를 국내로 다시 원상복구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자별 민원 접수건수입니다. 조사대상 기간 중 '페이스북 접속지연·장애로 인한 이용자 문의 및 불만 접수건수'는 월평균 SKB 269건, LGU+ 136건, KT 4건, SKT 7건으로 나타납니다. 접속경로가 변경되지 않은 KT는 이용자 문의 및 불만 접수 건수에 큰 변동이 없었던 반면, 피심인에 의해 접속경로가 변경된 SKB 및 LGU+의 이용자 불만건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난 사실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위사실의 위법성 판단입니다. 관련법 규정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에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근거 조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심인의 사업자 지위 검토사항입니다. 피심인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피심인은 그동안 서면 및 구두진술에서 국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관련 규제에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부가통신사업자 지위에 대한 이견을 제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피심인은 아일랜드 소재 사업자로서 한-EU FTA 협정에 따른 협정국 소관 해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WTO GATS 및 FTA 협정에 따라 해당 협정국 소관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의 국경 간 공급을 허용하고 있어서 해당 협정 소관 해외사업자가 해당국에서 부가통신사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국경 간 공급방식으로 부가통신사업 신고 없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기간통신 역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7조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규정에 따라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외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심인은 한-EU FTA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자로 판단되며, 국내에서 서버를 임대하고 한국으로 서비스를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고,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피심인이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는 KT와의 계약기간이 '18년 7월 만료 시점까지 충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SKT·SKB·LGU+ 및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심인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라 SKB·LGU+ 이용자들은 페이스북의 접속지연, 사진·동영상 재생 불능 등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으며, 네트워크 응답속도는 저하되고 민원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 제한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네트워크 응답속도, 민원 폭증 등의 사례를 종합할 때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됩니다. 네트워크 응답속도는 네트워크 품질을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접속경로 변경 후 약 4.5배 지연되고, LGU+ 무선은 약 2.4배 지연되었다면 정상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현저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서비스 이용품질과 관련하여 민원이 폭증했다는 것은 서비스가 정상적인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났다고 또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소결입니다. 피심인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제1항제5호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4] 나호나목5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SKB·LGU+ 이용자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하여 KT, CJ헬로 등 다른 ISP 이용자에게 비해 메시지 교환, 사진 공유, 동영상 재생 등의 이용에 제한을 발생시켰고, 특히 피심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지속한 것은 SKB 및 LGU+ 이용자들을 차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는 차별의 대상을 “요금, 번호, 설비 또는 그밖의 경제적 이익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메시지 교환, 사진 공유, 동영상 재생을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의견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실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피심인은 접속경로 변경 이유를 KT 측에서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KT는 피심인이 독자적인 결정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이고, KT는 경로를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해외로 트래픽 경로 변경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결과, 피심인은 KT와 협의하거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피심인의 자체 네트워크 계획에 따라서 접속경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행위 결정권은 페이스북에 있었고 변경행위 책임도 페이스북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KT가 피심인과의 협의과정에서 제안한 트래픽 분산방식은 KT목동 IDC의 페이스북 캐시서버로 3사 회선을 직접 인입하는 접속방식으로 문제가 된 해외 ISP를 통한 중계접속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이용자 이익저해 발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입니다. 피심인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ISP네트워크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에 대해 예상하지도 못했고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접속경로 변경 후 문제가 있다는 메일을 몇 통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접속경로의 변경이 원인이라고 할만한 충분한 입증자료도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피심인은 SKB가 이용자 불만을 알린 후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은 고의는 없더라도 이용자의 서비스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있다고 보입니다. SKB·LGU+의 접속경로 변경 관련 사전협의 여부입니다. SKB·LGU+와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피심인은 사전에 협의할 계약상 혹은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비록 접속경로 변경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ITW 포럼 및 아시아피어링 포럼 등 대면회의를 통해 홍콩을 통해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과기정통부의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ISP와 CP는 서비스의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심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피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접속경로 변경을 위한 구체적인 날짜, 방법 등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면,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실무 차원에서 사전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어서 이는 협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나>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 문제입니다. 피심인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서 인터넷 접속 품질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그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심인은 스스로 접속경로를 변경할 수 있었고 피심인의 변경행위로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책임을 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서비스 이용제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로서 서비스 이용제한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이용자들은 광고를 소비하는 대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에 받았던 수준과 동등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합리적 기대는 서비스 이용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피심인의 행위는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를 포함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성과 관련된 판단입니다. 피심인은 접속경로 변경은 KT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페이스북의 약관에도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스북 약관은 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기능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KT가 해외로 접속 경로를 변경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고, 설사 KT가 요구하더라도 접속경로 변경은 페이스북이 직접 한 행위입니다. 페이스북의 귀책여부를 불문하고 항상 페이스북의 면책을 규정한 약관은 부당한 약관으로 판단됩니다. 이용자 이익저해의 현저성과 관련된 판단입니다. 피심인은 네트워크 응답속도가 지연됐다고 하나 이용자가 체감하기 어렵고, 단순히 민원이 증가했다고 해서 현저하게 저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네트워크 응답속도, 민원 건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 접속 상태의 품질이 과거 수준보다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편을 느끼는 이용자 중 실제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는 약 6% 수준이라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실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느낀 이용자 수는 약 4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안)은 <1안>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안과 <2안>으로 시정명령만 부과하는 방안 두 가지를 보고합니다. <1안>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은 외국계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이 처음이긴 하지만 글로벌 1위 SNS 사업자이며, 국내 일일 접속자수 1,20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사업자로 그에 따른 책임도 크고,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구분 없는 공평한 법집행을 위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건의드립니다. 첫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피심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명령하고자 합니다. 시정조치 받은 사실 공표는 한글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접속경로 변경 관련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과징금 부과입니다. 피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및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분기준」에 위반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되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피심인은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 요금을 받고 있지 않으며,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영향을 받은 사진·동영상 재생 등 피심인 서비스 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하여 객관적인 매출액 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액과징금의 경우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기준액 및 고려 사유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성의 정도 판단입니다. 피심인은 국내 일일 접속자 수가 1,200만명에 달하는 등 통신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업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였고, 특히 접속경로 변경 시 발생할 문제점이 사전에 인지되었음에도 관련 ISP와 사전협의나 이용자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였으며, 피심인의 행위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인지하고 나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문제행위를 지속시킨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피해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부과기준액 결정입니다. 피심인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할 경우에는 3억원 초과 6억원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기준금액은 범위 내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바 시장 왜곡 정도, 피해범위,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4억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기준금액을 4억원으로 정하고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기간이 '16년 12월 8일부터 '17년 11월 18일까지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20% 필수적 가중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 필수 가중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최근 3년간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의 10%를 필수적 감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 조사 착수 후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10% 감경하고자 합니다. 최종 과징금을 3억 9,6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안> 시정명령 부과(안)은 <1안> 시정명령 부과(안)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붙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안), 피심인 의견진술에 대한 검토의견,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의 사업법 위반은 처음입니다.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해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야기된 것은 이미 입증되었고 분명한 것 입니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2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명령만 부과해도 충분한 정책적 목표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처 에서 성안한 내용에도 있지만 우선 첫째 사업법 위반이 처음이고, 그다음에 이로 인해 별도의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페이스북 본사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진술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인정했고, 또 국내 이용자들의 민원이 제기된 이후 페이스북 내부 관계부서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는 나름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했고 또 향후 국내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실조사 직후 페이스북이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굳이 과징금까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해도 페이스북의 세계적인 명성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2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의견 주십시오.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에 애플코리아와 구글의 위치정보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심결 이후 글로벌사업자에 대한 두 번째 제재입니다. 거대 글로벌 인터넷기업의 비즈니스 행태와 우리나라 규제체계의 부정합성에서 발생한 이용자 이익 침해에 대한 최초의 심결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장시간에 걸쳐 어려운 사안과 씨름해 준 사무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분명히 할 것은 페이스북이 SKT나 SKB 그리고 LGU+의 이용자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으며, 그 결과 국내 이용자의 페이스북 접속이 제한되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핵심 원인은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접속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 동기 때문입니다. 규제기관의 역할이자 추구해야 할 기본적 가치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방통위를 비롯해서 전 세계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일관된 원칙이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 쟁점이 됐던 것, 즉 국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페이스북 아일랜드의 사업자 지위 문제, 그리고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 여부, 서비스 이용 제한의 판단기준, 이용자 이익 저해 현저성과 관련해서 피심인의 주장은 일부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무처의 검토의견이 훨씬 더 유용하다고 봅니다. 다만, 표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페이스북이 조사과정에서 보인 적극적인 협력 태도나 문제 발생 후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그리고 향후 한국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규제기관의 규제정책을 존중하겠다는 본사 차원의 의지표명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피심인에 대해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는 <1안>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페이스북의 일일 국내 접속자 수가 1,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영향력이 큽니다.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 책임도 크게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심결은 페이스북의 SNS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세계 최초의 제재사례가 되는데 맞지요?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 **허 욱 부위원장**

- 향후에는 EU 등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전 세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도용사건을 보더라도 이익 추구를 위해 정도경영에서 벗어날 경우 글로벌 사업자라도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리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심결을 계기로 페이스북이 이용자 권익 보호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하고 정도경영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긴 기간 동안 쉽지 않은 조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페이스북은 가입 이용자만 전 세계적으로 12억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SNS 사업자입니다. 국내 이통사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서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해서 서비스 접속 장애, 서비스 속도 저하 등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조사 내용대로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등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에서 저는 2가지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이용자 이익저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입니다. 접속경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변경한다면 부득불 서비스 속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트래픽 문제라든가, 그래서 접속경로 변경이라는 기술적 조치가 국내 이통사들의 민원제기가 없더라도 서비스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특히 서비스 품질에 저하를 준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불편, 불만들이 제기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페이스북 정도의 글로벌 SNS 사업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자체적인 인지와 조치 외에 그것을 하기 전에 국내 이통사들인 SKT나 LGU+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페이스북 쪽에 이메일을 보내서 민원 발생 문제, 그리고 속도의 저하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지요?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분명히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페이스북도 충분히 인정한 내용이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용약관의 부당성입니다. 약관을 보면 “페이스북은 언제나 방해, 지연, 결함 없이 기능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약관은 사유를 불문하고 페이스북 측의 귀책사유, 책임이 없다는 어찌 보면 페이스북의 면책을 규정한 부당한 약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없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부당하다고 보이고, 이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면책규정인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사무처의 입장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시정명령에 이 약관에 대한 시정요구가 들어갑니까?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시정명령은 저희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인가받은 약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통신사업자는 인가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약관 개선 명령은 내릴 수 없고 대신 권고 형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페이스북 측이 사업자 지위와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라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이지 않습니까?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국내법 체계에 해당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FTA나 국제 협정 등을 근거로 해서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로 의제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그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이후에 페이스북 측이 과기정통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아직 신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고 일단 과기정통부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국계 기업에서도 신고를 충분히 받겠다, 그렇게 제도 개선 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는 '페이스북 쪽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신고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당 약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을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제재 수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앞서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페이스북의 일방적인 접속경로 변경 또 그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은 발생했습니다만 사업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이나 이용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됩니다. 맞습니까?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간접적인 피해는 잘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저희가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리가 제재 수위를 정할 때는 제재를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과 더불어서 법규 위반의 정도에 비례해서 제재수위는 결정되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저는 그 2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현재 안건 <1안>은 중대한 위반행위로 봤습니다. 그 고려 사유를 보면 시장의 단기적 왜곡이 일어나야 하고,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의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고려 사유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페이스북이 이번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응한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납세 등 국내 규제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용자보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이전이라도 자체적으로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과거 카카오 특의 정액과징금 부과사례를 인용해서 이번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과징금의 규모를 산정했는데, 그때 카카오 특 알림톡의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일단 발생했습니다. 메신저 시장에서 매출액이 발생했고 아주 소액이지만 이용자들의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그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 위원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습지만 저는 제재수위와 관련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되, 중대한 위반행위보다는 그보다 낮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세한 설명을 또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이런 시각에서,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글로벌 해외사업자의 사업영역이 국적과 또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들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이용자들도 충분히 편의성을 인정하면서 또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나 또 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 계속 묵살하고 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IT업계의 국제적으로 차지하는 위상이나 위치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자의 명백한 피해가 발생했음이 확인된 사안에서조차 규제 당국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만다면 그것은 국제적으로도 저희들에 대해서 평가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페이스북이 우선 자기들이 잘못된 점을 시인하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도 그것을 가지고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잘못을 시인하고 직접 와서 구두 진술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의 있는 조치도 보였습니다. 다른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피해액이 우리가 명확하게 추산할 수 없다, 다만 이용자 불편이 상당했다는 부분도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지하고도 10개월 동안 방치했다는 점은 글로벌 사업자로서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한국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페이스북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성의 있는 조치도 있었고, 또 다른 글로벌 사업자와 달리 적극적으로 앞으로 수익에 대한 신고를 해서 한국에서도 조세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감안할 때 과징금에 대한 경감을 어느 수위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여러 가지 안전을 다루면서 굉장히 강한 입장을 취했는데 이 건은 제가 낸 의견 가운데 가장 어찌 보면 수위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히 할 것은 저희들이 과징금까지 병과한다고 해서 강한 처벌이고 시정명령만 한다고 해서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정명령도 글로벌 사업자가 이런 사실을 다 공표해야 하고, 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도 제출해야 하고 이런 사항들이 다 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논의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은 하겠지만 시정명령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한 분께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하는 의견이셨고, 세 분께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도 부과하는 안이었는데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 혹시 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먼저, ISP 시장의 양면적인 특성을 감안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쪽 차원에서 보면 CP업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해외 글로벌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콘텐츠업체에 비해서 글로벌 거대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망 중립성이 거의 망의 대가를 사용하지 않는 측면처럼 비춰진다는 것은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업자 간 규제의 형평성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사안입니다. 이를 테면 캐시서버 설치를 포함해서 본인들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진 사안도 아닙니다. 시장의 단기적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이유가 피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접속경로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용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만 또 다른 시장인 국내외 CP사업자 일부에서 보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위반행위의 중대성 관련입니다. 사무처에서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가운데 4억원을 기준점으로 놓고 가중과 경감을 해서 최종적인 과징금이 4억원이 안 되게 처분한 것은 적절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이용자 피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큰 사안이고 이것이 국내 사업자라고 한다면 굉장한 정도의 징계가 내릴 정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내 콘텐츠업자와의 형평 문제, 또 소위 말하는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페이스북이 국내 SNS 1위입니다. 1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이하게 우리 이용자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접속 경로를 변경하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고, 특히 우리 인터넷 이용자들은 속도에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피해가 번연히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성의한 것이고 시장을 안일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시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중대하지 않은 행위로 보기에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차라리 경감을 어느 정도로 해 줄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경감이 추가적으로 10%가 됐는데 이것을 좀 더 하자는 말씀입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좀 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과징금까지 부과하는데 동의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 중대성의 정도 그 자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피해가 경미하고, 또 이용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다수로 결정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담당자들께서는 만일 경감을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다시 한 번 경감을 더 할 수 있는지,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견을 주시지요.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현재 저희가 필수적 감경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가적 감경 부분에서 저희가 10% 정도 감경을 위반행위 자진 시정으로 할 수 있는데 2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든지, 약간 그런 부분에 추가적 가중·감경의 재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경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지금 제가 듣기로는 김석진 위원님이나 고삼석 위원님은 추가적 감경을 논의할 수 있겠으나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의견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저도 부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 의견을 종결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무선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저희 사무처 의견은 안전대로 원안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의 생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김석진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이 특별히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식으로 한다면 원안 <1안>으로 가도 우리 의견을 숫자상으로 볼 때 표 위원님께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네 분의 의견은 거의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위원장님, 사무처 의견 중 필수적 감경은 더 이상 여지가 없지요?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필수적 감경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부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및 사항에 따르면 우리 기준은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최대 50% 감경까지는 가능한데 세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 감경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찾아볼 수 있으면 위반행위에 대한 방통위 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에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지금 추가적 감경을 10% 했는데 추가적 감경은 추가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이 행위 자체에 대해 사무처에서 안을 2가지로 냈는데 <1안>의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라면 이것을 또 감경하는 자체는 모양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하든지, 시정명령으로 하든지, 중대한 위반행위로 정한다면 사무처 안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것을 다시 추가 감경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논리에 비해 조금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의 취지를 잘 알겠고, 김석진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의 취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 <1안>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경해 주자, 이런 동정론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구글이나 애플

에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전혀 우리에게 협조도 하지 않고 거기는 미국에서 페이스북 부사장이 직접 와서 우리 위원장도 만나시고 또 피심인 진술까지 했습니다. 이런 행위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해외 사업자를 부른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앞으로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조사에 협조하고 직접 부사장이 미국에서 와서 진술까지 했던 부분은 앞으로 하지 않을 사람들과는 구분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꼭 깎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 이것을 흥정하고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우리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사무처는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을 계속 고수하시는 것이지요?

○ 고낙준 통신시장조사과장

- 조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도 원안 의견이시지요?

○ 허 욱 부위원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원안 <1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특히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페이스북은 세계 SNS 1위 사업자이고 국내 일일 접속자 수가 1,200만명이나 되는 등 시장과 사회에 영향력이 매우 큰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책임의식도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망 접속경로 변경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지 않은 채 접속경로 변경상태를 10개월 이상 지속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민원이 평소보다 폭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방통위 사무처도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제도개선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위반 행위여서 방통위는 사실관계 조사, 법률적 쟁점 등을 판단하는 데 신중하고 심도 있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해외사업자라는 점에서 국내 사업자와는 달리 자료 제출, 홍콩과 미국에 거주하는 관련자에 대한 국내 출석조사 등에서 추가적인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과 페이스북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안전을 준비한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7. 보고사항

가. 2017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 이효성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2017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사유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1조, 「방송법」 제35조의5에 따라 실시한 2017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2017년 방송시장 확정(안)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시장을 4개로 나누어 봤습니다.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 방송광고 시장 이렇게 4등분 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유료방송시장의 상품시장은 SO사업자가 제공하는 8VSB 상품을 기존의 <아날로그 유료방송시장>,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최초로 분리하여 <8VSB 유료방송시장>으로 별도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시장은 SO 방송구역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상품시장의 경우 8VSB 상품은 아날로그 속성과 디지털 속성을 모두 갖고 있지만 양 상품과 수요대체성이 적어서 타 상품에 가하는 경쟁압력이 높지 않아 별도 상품시장으로 확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지리적 시장은 SO의 경우 수요·공급 대체성이 낮고, SO와 전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상품의 경우에도 가격이나 상품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국이 동질적인 시장이라고 간주할 근거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서 SO 방송구역으로 지리적 시장을 확정하였습니다. 방송채널 거래시장은 <유료방송채널 거래시장>과 <지상파 3사별 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거래시장> 전체를 동일 상품시장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방송광고 시장은 전체 방송광고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확정해서 분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장별 주요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유료방송시장입니다. 시장 현황을 보면 '16년 말 기준 유료방송시장은 아날로그, 8VSB와 디지털 상품 가입자를 모두 포함해서 2,996만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상품별로는 아날로그 상품 가입자는 280만으로 감소한 반면에 8VSB 상품 가입자 수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36만으로 급증하였고, 사업자별로는 KT계열이 가입자 수 1위로 전체 가입자의 30.3%를 점유한 가운데, SKB가 13.2%를 차지해서 CJ헬로의 13.1%를 제치고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플랫폼별로는 SO는 1,389만으로 유료방송가입자 중 46.4%를 점유하고, IPTV는 1,289만으로 43.0%를 점유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매출액입니다. 방송사업매출액은 5조 1,625억 원으로

'15년 대비 9.4% 증가한 가운데 수신료 매출은 2조 8,969억 원으로 '15년 대비 3.9% 성장하였으나 방송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대비 3.0%p 하락한 56.1%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은 1조 2,561억 원으로 '15년 대비 9.3% 증가하였고, 방송사업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3%로 '15년 대비 0.2%p 상승하였습니다. 평가결과입니다. 먼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은 IPTV가 가입자 증가세를 주도하면서 디지털 가입자 수는 2,380만명으로 전년대비 8.4% 증가한 가운데, 유료방송가입자 중 디지털 비중도 79.4%로 높아졌습니다. 사업자를 보면 '16년 말 기준 총 78개 구역 중에서 전년대비 2개 증가한 45개 구역에서 KT군이 가입자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고, 디지털시장 가입자 점유율도 38.2%로 전년대비 0.2%p 증가하였습니다. CJ헬로와 딜라이브가 각각 11개 구역, HCN이 5개 구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동일하였지만 아날로그 가입자를 디지털보다는 8VSB 전환에 주력한 티브로드의 1위 구역수가 2개 감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독립SO는 남인천방송이 1개 구역에서 1위를 하였고, KT 이외 1위를 기록한 IPTV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가입자 기준 2위인 SKB가 16.6%의 점유율로 전년대비 0.8%p 증가했고, 3위인 LGU+도 12.8%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IPTV 3사가 가입자 점유율 1위에서 3위까지를 기록하는 강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SO의 디지털시장 가입자 점유율은 32.5%로 전년대비 1.7%p 감소한 가운데, SO 중에서는 CJ가 11.1%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집중도를 보면 '16년 말 기준 78개 디지털 유료방송구역별 시장집중도를 평균한 수치가 3,180으로 전년대비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이는 SO의 QAM 방식 디지털 가입자 수가 증가한 가운데 1위 사업자인 KT군의 점유율이 약간 상승했지만 다른 IPTV 사업자들의 점유율 상승세가 더 빨라서 상대적인 격차는 축소된 결과입니다. 요금은 수신료 기반 가입자당 매출에서 SO는 전년대비 약 652원 하락한 4,641원 수준이었고, IPTV의 경우도 8,066원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위성, SO, IPTV 순으로 위성방송이 14.7%, SO가 11.5%, IPTV는 -5.2%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IPTV는 적자규모가 1,267억 원으로 '15년도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8VSB 시장입니다. 가입자의 경우 SO가 아날로그 가입자의 8VSB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16년 말 현재 336만 가입자로 전년대비 116.7% 증가해 아날로그 가입자를 추월하였습니다. '17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406만 가입자를 기록해서 6개월 만에 20.6% 증가하는 등 빠르게 아날로그 시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보면 8VSB는 '16년 말 현재 5개의 MSO와 10개의 독립 SO가 총 78개 방송 구역에서 영업 중인데 61곳에서는 독점 구조를, 13곳에서는 복점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복점 구역을 보면 8VSB로 전환하는 SO들이 증가하면서 13개 복점 구역의 시장 집중도 평균이 7,802로 '15년 7,966에 비해 낮아졌습니다. 요금의 경우에는 5대 MSO 기준 8VSB 시장의 가입자 1인당 매출액이 3,444원으로 아날로그보다는 약간 높지만, 디지털 케이블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날로그 시장입니다. 가입자의 경우 8VSB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16년 말 현재 280만 가입자로 전년대비 40.1%나 감소했고,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에서 아날로그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4%로 전년대비 약 7.3%p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일부 SO가 8VSB 방식에서의 전환을 사실상 완료하면서 총 78개 방송 구역 중에서 63곳에서는 독점 구조를, 8곳에서는 복점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J헬로가 22개 구역에서 가입자 점유율 1위, 지난해 1위 구역 수가 가장 많았던 티브로드는 8VSB 전환 증가로 점유율 1위 구역 수가 19개에 그쳤습니다. 8VSB 전환이 지속될수록 아날로그 시장에 대한 별도 평가 필요성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

습니다. 기타 별도 시장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VOD와 OTT도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유료 방송이 제공하는 VOD의 경우 VOD 매출액이 '16년 기준 7,055억 원으로 전년대비 10.6%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수신료 매출에서 VOD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4.4%로 전년대비 1.5%p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서비스 선택에 VOD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응답자의 상당수는 유료방송 서비스를 선택할 때 VOD 이용요금과 VOD 콘텐츠 수량 및 다양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다음 OTT 서비스입니다. OTT 동영상서비스 이용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료방송서비스도 앞으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77.8%로 해지하겠다는 응답 비중 22.2%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방송채널 거래시장입니다. 먼저 유료방송 채널 거래시장입니다. 시장 현황을 보면 일반PP의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은 6,670억 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1위 사업자인 CJ계열 점유율은 29.3%로 전년대비 0.9%p 감소하고, 2위는 MBC계열, 3위는 SBS계열이 차지하였습니다. 종편PP와 계열 PP의 점유율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고, 지상파 계열 PP 점유율도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작비를 보면 일반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총규모는 1조 2,761억 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성을 보면 상위 3대 사업자인 CJ계열, MBC계열, SBS계열 MPP의 영업이익률이 각각 2.9%, 1.3%, 2.0%로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결과입니다. 1위 CJ계열과 2위 사업자 간 상당한 점유율 격차가 존재하지만 소폭이나마 지속적으로 간격이 좁혀지고 있고, 상위 3대 사업자 점유율과 시장집중도 모두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 사업자인 CJ계열 PP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 지수 모두 통상적인 수준에서는 경쟁제한성을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유료방송 플랫폼 가입자 확보 경쟁이 증가하면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고품질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져서 인기 유료방송채널의 협상력 강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상파채널 재송신권 거래시장입니다. '16년 재송신 계약 갱신 협상이 타결되었고, 디지털가입자 증가 등으로 지상파방송 3사와 계열 지상파 방송사의 채널 재송신 매출 규모는 전년대비 51.2% 증가한 2,298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의 전체 방송사업 매출 중에서 지상파 채널재송신 매출 비중은 2016년 기준 5.7%로 전년대비 2.0%p 증가하였습니다. 시장집중도를 보면 수요자인 유료방송 플랫폼 입장에서 각각의 지상파 채널을 여타 채널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지상파방송 3사별로 재송신권 시장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장집중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급측인 지상파사업자의 시장집중도가 여전히 높고,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의 협상력 역시 상당한 수준이어서 이들 각각의 경쟁제한적 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종편 및 대규모 PP 등 비지상파 채널의 성장이 지속될 경우에 수요자인 유료방송플랫폼이 인식하는 방송채널 간 수요대체성의 변화 가능성이 있어 향후 시장확정 변경 가능성을 계속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방송프로그램 거래시장입니다. 시장 현황을 보면 외주제작비 총규모는 8,808억 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였습니다.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비는 0.6% 감소한 데 비해 일반PP의 외주제작비는 18.9% 증가하였습니다. 상위 3대 수요자는 여전히 지상파 3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각사별 점유율은 MBC계열이 23.0%, SBS계열이 22.7%, KBS계열이 15.7%를 기록하였습니다.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는 '15년 627개에서 '16년에 755개로 20.4%가 증가했는데 이 중에 납품실적이 있는 외주제작사의 91.0%는 연간 5개 이하, 절반 이상의 외주제작사는 단 1개의 방송프로그램만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평가결과를 보면 외주프로그램에 대한 CJ계열, 종편계열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 증가와 KBS계열의 수요 감소로 인해 '16년 수요점유율 기준 시장집중도는 1,536으로 전년대비 107p 감소하였고, 상위 3대 수요자의 수요점유율도 전체 외주시장의 61.4%로 전년대비 4.4%p 감소하였습니다. 수요집중도가 '16년에는 비교적 큰폭 감소하였지만 전반적인 시장 구조가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봤습니다. 외주제작사들은 수요집중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의 협상력 우위가 여전히 강하게 지속된다고 보는데, 이는 방송사 대비 외주제작사가 월등히 많은 시장구조의 특성이 상당부분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위 10개 수요자가 외주제작 수요의 95.8%를 차지하는 반면에 공급자인 외주사는 진입장벽이 없다 보니 '16년 기준 755개나 되어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협상력 차이는 높은 수요집중도, 공급자수 과다 등에서 기인하며, 시장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외주제작사의 대형화 등을 통한 시장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광고 거래시장입니다. 전체 광고시장은 10조 4,338억 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PC매체의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매체의 비중 증가로 PC와 모바일을 합한 온라인광고의 비중은 전년대비 3.1%p 증가한 32.4%를 기록해 TV방송광고의 비중은 하락 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 '11년 36.7%에서 '15년 34.4%, '16년에 31.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16년 방송광고시장 전체 규모는 2조 9,133억 원으로 9.0% 감소하고, 협찬매출액은 7,343억원으로 6.4% 증가하였습니다. 방송광고와 협찬을 합한 총 매출액도 3조 6,476억 원으로 전년대비 6.2% 감소하였습니다. 지상파3사 계열의 광고매출 점유율은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3년 65.4%를 시작으로 '16년도에 56.8%까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E&M 광고매출 점유율은 '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가 '15년에 반등한데 이어 '16년도에도 증가하였습니다. '12년도에 10.7%였는데 '16년에 1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종편4사계열의 '16년 광고매출액은 '15년 대비 0.3% 감소하였으나, 점유율 합계는 '15년 대비 1.0%p 증가한 11.3%를 기록하였습니다. 평가결과입니다. 상위사업자인 지상파3사계열의 점유율이 감소 하면서, 광고매출액 기준 방송광고시장 집중도는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상위사업자인 지상파3사계열의 시장점유율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CJ E&M 및 종편4사계열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시장집중도는 완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출액과 달리 협찬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이달 말까지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대한 경쟁상황평가 자료를 평가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방송광고시장 전체 규모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에 비해 협찬매출액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협찬이 늘어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감안할 것인가를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외주제작사 문제, 여기 자료에도 755개 정도로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무처에서 만들어 주신 자료에는 외주제작사 대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 외주제작사들을 대형화하려면 서로 결합을 하든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매년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하겠고, 또 우리 정책을 세울 때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의 변화를 잘 읽고 정책을 잘 세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점만 말씀드리면 방송채널 거래시장을 볼 때 CJ계열 점유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29.3%. 이것은 MBC계열이나 SBS계열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압도적인 1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출액 대비 그만큼 CJ 계열사도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을 외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CJ계열사는 물론 프로그램 잘 만들면 그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책임을 볼 때 순환편성에 대한 아무 규제가 없습니다. 지상파나 종편은 우리가 편성 규제까지 다 하고 있고 순환편성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J계열은 그런 것이 없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인허가 사업자가 아니라서 그런 규제는 없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것이 없고, 그리고 방발기금을 내는 것도 아닙니다. 또 광고시장을 보면 광고시장에서도 지상파3사의 점유율 하락세가 매년 급락하고 있는 데 반해서 CJ E&M 점유율은 '16년도에 약 12%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고시장 또 방송채널 거래시장, 프로그램 매출액으로 볼 때 이제는 이렇게 광고를 독식해서 가져가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사회적 책임, 공적책임,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PC와 모바일을 합한 온라인광고 비중이 매년 올라가서 TV방송광고가 점점 떨어지는 데 반해서 2016년도에 추월을 했습니다. 전체 광고시장 대비 TV방송광고시장은 점점 떨어져서 31.9%, 온라인광고는 32.4%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광고 정책을 세울 때도 물론 분야는 다르겠지만 대신에 종편은 방송광고가 엄청 뜨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언제까지 기존의 틀 속에 방송광고시장을 묶어둘 것인가, 또 프로그램 거래시장도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건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허 욱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방송산업 실태조사, 그리고 재산상황공표집과 함께 위원회 내부에서 각종 정책을 생산할 때 참고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매년 하는 평가작업이지만 시장 확정과 경쟁상황평가 시 고려해야 할 이슈들이 매년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서 쉽지 않은 과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가 소관이어서 평가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의 노력을 치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평가결과가 2016년 시장상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즉각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번 평가작업을 통해서 정책적인 시사점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정책과제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위원회가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을 몇 가지 뽑아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전체 유료방송 수신료 매출에서 VOD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4.4%이고, 또한 설문 응답자 절반 이상이 VOD 이용요금과 콘텐츠 수량 및 다양성이 선택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VOD 서비스에 대한 정책방안 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고, 이와 더불어서 OTT 서비스로 인한 코드 커팅(Cord-Cutting) 가능성이 아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고정형TV를 겨냥한 OTT 서비스, 즉 텔레비(TELEBEE)나 뷰잉(Viewing), 딜라이브 플러스 등이 출시되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2017년도 평가에서는 OTT 시장을 중요 시장의 하나로 인식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둘째는 표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사안들이 아마 중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외주제작프로그램 시장이 CJ계열, 그리고 종편PP 계열 수요 증가로 인해 수요집중도는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외주 제작사의 91%가 연간 5개사에 방송프로그램을 납품하는 공급 측면의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외주제작시장의 대형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제작비나 저작권 배분협상에서 방송사가 여전히 외주제작사에 비해 협상력 우위를 지니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이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방송사와 외주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아까 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찬이 급증했습니다. 따라서 협찬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던 것처럼 협찬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유료방송 시장확정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6년에 CJ헬로와 SKB 합병 이슈에서 보듯이 유료방송 시장 확정 이슈는 방송시장의 구조 개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요소입니다. 따라서 유료방송 시장에 대해서 서비스의 수요공급 대체성 분석이나 수요공급 대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나 혹은 비용조건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 동일한 가격을 부여할 수 있는 이른바 공통 가격계약 효과분석 등을 통해 이 시장이 지리적 시장인지, 혹은 전국적 시장인지 정확히 분석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런 과정에서 현재 유료방송의 소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방송법에 의한 방통위의 법정 직무이기 때문에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기반 조성 차원에서 접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부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언급하셨습니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방송분야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과기정통부 소관의 유료방송정책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방송법상 우리 위원회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가 경쟁상황평가를 단독으로 주관함으로 인해서 유료방송정책 추진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정합성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업 관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방송산업 실태조사도 같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크게 본다면 물론 업무분장의 효율성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은 흔쾌히 먼저 과기정통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서 협업하자, 그러면 또 과기정통부에서는 그쪽 업무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와 연관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와 같이 하자고 하면 아무래도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처장님께서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지요.

○ 조경식 사무처장

- 알겠습니다. 평가위원회 할 때도 공동으로 한다든지 그런 협력방안을 해서 연계성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또 협력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더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기정통부와 협조할 수 있으면 더 협조해서 더 정밀한 그리고 다양한 조사결과들이 나오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방송광고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방송 시청행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광고협찬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외주제작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등등 추세를 읽을 수 있고,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한 추세를 정확히 읽고 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사와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정책 마련할 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혹시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동안 장기간 파행을 빚어왔던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이 우여곡절 끝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은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조직원이 1,000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한 YTN에서는 새 사장 인선 이후 노사 간 갈등에 따른 장기파업으로 인해 방송파행이 5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보도전문방송으로서 사회적으로나 공익적으로 그 책무가 결코 가볍지 않은 YTN의 장기간 방송파행은 유료방송 가입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더 이상 장기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YTN 문제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 주무기관으로서 보도전문 방송의 장기간 파행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혹시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방송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합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80명의 기자를 현업에서 배제했을 뿐만 아니고 과거 10년간 그동안 법인카드 쓴 내역을 감사하고 있고, 또 오늘 불거져 나온 이야기는 개인 이메일을 불법으로 들여다봤다는 주장이 나와서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감사국이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을 본인의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열어봤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왜 알려졌느냐 하면 감사국 직원이 해당 직원에게 물론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입니다. “몇 월 며칠 언제 이런저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느냐?” 이런 확인, “왜 삭제했느냐? 삭제된 내용이 무엇이나?” 완전히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모를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내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10년간의 과거 행적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것은 가히 상상을 하지 못할 개인 사생활 침범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무처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국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무처가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표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문제제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YTN의 파업이 40일 넘어서 자칫하면 장기화 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파업, 노사 갈등 이 문제는 당사자인 노와 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재 YTN 노사의 대립상황을 고려한다면 노사의 자율적인 대화를 통한 직접적인 해법 마련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개입의 정도나 특히 조정의 방법이 문제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노사의 대화 재개에 역할을 하고, 특히 경영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YTN 이사회와 협의해서 노사가

현재 대립상태를 정리할 수 있는, 하루속히 YTN이 정상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고민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께서 우선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이고, 사무처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방문진에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문제는 저 또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입장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만 상황이 너무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철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그 부분을 더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회라도 또는 제가 특히 나서서 중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신 것 같고, 고삼석 위원님도 아마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방송업계에 몸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노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더 돕는 것이 1차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아마 그런 노력들이 꽤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극한 대결로 치닫고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율적인 협의를 바라면서 지켜봤지만 더 이상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송통신의 규제기관 장으로서도 조금 지나친 방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YTN 노사 관계자들께서 국민에게 가장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또한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직접 중재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절대 개입은 아니고 지금까지의 중재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방송통신의 수장으로서 제가 최후 노사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심정으로 정말 엄정한 중재자로서 필요하다면 그런 역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YTN 노사 양측이 전향적인 대화에 나서서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가지고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차기 회의는 3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8년 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52분 폐회 】